

#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08
----------	-----

2014년 12월 17일  
운영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. 9. 16. 김인제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14. 9. 22.

다. 상정일자 : 제257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

【2014년 12월 17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】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김인제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현행 「지방자치법」은 지방의회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지방의회 의원이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출석정지 등으로 징계를 받더라도 아무런 제재 없이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, 여비를 모두 지급받고 있는 실정임.

또한 구금된 상태에서도 해당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, 질문 등을 통해

취득한 자료와 지급받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음

이에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확정 판결 시까지 그 권한 행사를 정지할 필요가 있고, 아울러 권한 행사의 정지 및 출석정지의 징계 사유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, 여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「지방자치법」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에 건의함.

### Ⅲ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박노수)

#### 1 건의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

○ 건의안은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 대하여 ‘권한 행사의 정지’와 함께 의정활동비·여비와 월정수당(이하 ‘의정활동비 등’)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을 건의하는 것임.

※ 김인제 의원 대표 발의로 「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의안 번호: 107)」이 회부된 바,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되,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소급지급하도록 하고 있음.

#### 2 의원 의정활동비 법적 근거

○ 지방의회의원에게는 「지방자치법(이하 ‘법’)」 제33조에 따라 의정활동비·여비·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음.

※ 의정활동비 등 개념(지방자치법 제33조)

의정활동비	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금원
여비	본회의 의결·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금원
월정수당	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
○ 이 중 월정수당은 급여의 개념이고, 의정활동비 등은 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,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의 범위에서

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(지방자치법 제33조).

※ 서울시의원은 매월 월정수당(약371만원)과 의정활동비(자료수집비 및 연구비: 120만원, 보조활동비: 30만원)를 지급받고 있음.

### 3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

- 최근 공소제기된 이후 구금상태에 있는 동안에도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는 의원에 대한 여론의 지적 등이 있어 왔음(TV조선, 2014.11.23. ‘이00, 구속 수감 후 세비 7억 이상 풀럭’ ; 시사포커서, 2014.10.31. ‘살인교사’ 김00 의원에 구속 중 1500만원 지급’).
-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김인제 의원 발의로 「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이 의회에 제안·회부되 바, 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공소제기후 구금상태일 경우 월정수당을 제외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임.
- 이 건의안은 월정수당까지 지급제한 대상을 포함하여 해당 의원의 직무권한을 정지하기 위한 것으로, 이는 주민의 권리제한시에는 「법」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법론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제안된 것으로 판단됨.
- ※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-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윤리의식 강화와 공소제기후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의 정치적 책임 등을 감안할 때 건의안의 취지는 인정되나, 정치적

대의기관인 지방의회 뿐만 아니라 국회의 경우에도 건의안의 취지에 상응하는 권한 제한과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- 또한 건의안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,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‘유죄판결’을 예상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반론(무죄추정의 원칙)이 있다는 점과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정치적 명예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.

※ 참고로 제7대 의회 이후 ‘의원 구속 현황 및 판결결과(참고자료 참조)’를 보면 9명의 의원이 형사기소 되었으나, 2명이 무죄판결을 받았고, 1명은 공판 진행 중에 있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9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# 「지방자치법」 개정 촉구 건의문

현행 「지방자치법」은 지방의회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지방의회 의원이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출석정지 등으로 징계를 받더라도 아무런 제재 없이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, 여비를 모두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.

또한 구금된 상태에서도 해당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, 질문 등을 통해 취득한 자료와 지급받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.

이에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확정 판결 시까지 그 권한 행사를 정지할 필요가 있고, 아울러 지방의회 의원이 권한 행사의 정지 및 출석정지의 징계 사유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, 여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「지방자치법」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 건의한다.

2014년 9월 일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